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대 구 경 북 통 합 신 공 항 건 설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안 제4조 및 제5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안 제6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등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서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초과사업비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

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
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
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
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
여 결정
-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마.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5조)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하고,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은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기계류·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하며,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 하고, 우대의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5. 25. ~ 7. 4.) 및 재입법예고(7.18. ~

7. 2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 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2. 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주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 이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예정지역(「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세대 구성원

③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

우: 해당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계약체결일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포괄승계일까지의 기간 동안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해 그 내용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기준

2. 제1항에 따른 훈련·교육의 내용·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3. 제2항에 따른 이주자의 인정 기준 및 그 입증 방법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주자(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주자는 제외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세대당 1천5백만원
 2.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세대 구성원 1인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으로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서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나.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라.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마.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바.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사.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아. 통합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자.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둔다.

②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
3.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⑤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군에서 군 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
4.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개략설계도서
7. 계획평면도
8. 자원조달계획서
9.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0.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1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가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가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유무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 금액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 지원 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

호에 따른 공사감리

- ②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④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
-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2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	법 제34조제1항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

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 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 우	제3호	획을 위반하여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으로 한다.
--	-----	---

비 고: 공사 금액은 설계도서에 적힌 공사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공사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검사 (앞쪽)

기관명(영문)	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 진 3.5cm × 4.5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 분(Occupation) :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 속(Employed by) :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85mm × 55mm [백상지 (120g / m²)]

(뒤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32(1)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DaeguGyeongbuk New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발행번호(Issued No.)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발행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검사 (앞쪽)

지방자치단체명(영문)	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 진 3.5cm × 4.5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 분(Occupation) :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 속(Employed by) :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85mm × 55mm [백상지 (120g / m²)]

(뒤 쪽)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이 사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32(2)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Previous Site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K-2 site redevelopment projects.	
발행번호(Issued No.) :	대구광역시장 직인 (DAEGU METROPOLITAN CITY)
발행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329